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39472(본소), 2017다239489(반소) 판결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B

판결 선고 2018. 9. 13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6. 7. 선고 (제주)2016나10287(본소), (제주)2016 나10294(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1억 5, 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설정계약에 기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위 피담보채무는 변제기인 2000 . 3. 30.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이사건 토지중 1/2지분과 이 사건건물에 관하여 마친 이사건 저당권 설정등기의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있다고 보아 원고의 본 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이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건물의 1/2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지분에 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 가 이 사건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이자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 하여금이 사건건물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

3.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주심 대법관 김소영대법관 박상옥대법관 노정희